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찬성자 : 36명)

나. 의안번호 : 제 993 호

다. 발의일자 : 2023. 8. 10.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제안이유

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인 5년 이내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잠실상수원”을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으로 한다”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78조”를 “「수도법」 제7조·제78조”로 상위법 인용 문구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다.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호)

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마. 제4조제1항에서 불필요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제4조로 개정함. (안 제4조)

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도 보조금은 제외함.(안 제4조제1호)

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인 “한강수계법”로 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존속기한이 2023.12.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한편,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수도법」 제7조・제78조 ----------.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제4조(세입) ----------

현 행	개 정 안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생 략)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1. 국가----------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6조[1]에 따라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11.15.일 설치된 것임.

○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자수입)과 보전수입(잉여금 등),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세입액은 345억 2천만원(〔표 2〕 참조)이고, 평균 지출액(’23.8월 기준)은 351억 73백만원(〔표 3〕 참조)임.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표 2] 최근 5년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합계	34,067	36,864	31,940	33,115	36,612	34,520
세외수입 (이자수입)	193	88	198	464	1,201	429
보전수입 (잉여금 등)	5,730	4,430	4,124	3,198	3,028	4,102
보조금 (국고보조금)	28,143	32,346	27,619	29,454	32,383	29,989

[표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8월 기준)	평균
예산액	32,818	39,555	33,967	33,731	35,792	35,173
지출액	29,637	32,746	29,951	30,060	14,783	27,435
집행잔액	3,181	6,808	4,016	3,671	21,009	7,737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가.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2]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3]를 거쳐 존속기한을 2028.12.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2)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 재정담당관-6214, 2023.5.26.

○ 특별회계의 역할과 실적을 살펴보면(〔표 4〕 참조),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잠실상수원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어 왔고,

- 1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목적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표 3] 최근 5년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2,818**	**39,555**	**33,966**	**33,731**	**35,792**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985	985	1,585	1,800	1,800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60	560	560	560	560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140	140	140	140	140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231	231	236	229	199
◦환경기초시설 설치	13,522	17,081	5,739	3,228	3,402
◦환경기초시설 운영	7,533	8,543	12,554	14,547	16,94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37	141	152	139	165
◦잠실상수원 관리	2,798	3,941	4,024	3,463	3,254
◦한강본류쓰레기처리사업	-	-	1,595	1,595	1,678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545	439	163	207	211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723	753	753	753	844
◦기금사업관리비	20	16	10	20	21
◦한강상수원 퇴적물 분포 연구	96	-	-	-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	-	-	200	-
◦정수비용 지원	-	-	-	465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2,818	39,555	33,966	33,731	35,792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265	3,265	3,078	3,100	3,210
◦보전지출	400	1,300	1,900	1,900	1,800
◦예비비 등	1,863	2,160	1,478	1,385	1,560

※ 예산 편성액 기준

나. 세입 재원 정비 관련(안 제4조제1항제1호)

○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에서 시·도를 삭제하려는 것임.

○ 이는 시·도의 보조금의 경우는 한강수계법 제16조[4]에 따라 시·군·구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5] 개정안 주요골자(안 안 제4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생략)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세입) ----------. 1. 국가----------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나.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5조)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약어 규정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6] 개정안 주요골자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제2조(정의) ----------. 1. --------- 「수도법」 제7조·제78조 ----------.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현 행	개 정 안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생 략)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제4조(세입) ----------. 1. 국가----------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세출) ----------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